

『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8월 2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8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9월 2일

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
2013년 10월 10일

제1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황종철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승마장 월 회원에게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(숲속의 집)를 할인하여 자연휴양림 및 승마장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-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숲속의 집 사용자의 주차료를 성수기에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6조)
- 자연휴양림 숙박객 중 구미시승마장 월 회원에게 비수기 60%,
성수기 30%의 할인율을 적용함.(안 별표 1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.(2013.8.19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용 우

□ 본 ‘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 은,

- 자연휴양림 및 구미시 승마장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
것으로서,
- 그 주요내용으로는,
 - 자연휴양림 숙박객(숲 속의 집 사용자)에게,
연중 주차료(2대/1동당)를 면제하여 사용편의를 도모하고,
 - 구미시 승마장 시설 월 회원에게는,
시설사용료를 성수기 30%, 비수기 60% 할인율을 적용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, 지방공공시설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승마장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안으로써,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